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8509
----------	-------

제안연월일 : 2026. 4. .

제안자 :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2200832	이학영의원	2024.6.24.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4.8.26.)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
2202835	안규백의원	2024.8.14.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2024.11.12.)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
2207410	송기현의원	2025.1.10.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5.4.28.)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
2208215	강준현의원	2025.2.17.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5.4.28.)
2208519	이병진의원	2025.2.27.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2208598	박용갑의원	2025.2.28.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5.8.26.)
2209238	김승원의원	2025.3.21.	
2210448	박덕흠의원	2025.5.9.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 위원회(2025.8.26.)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 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
2210803	윤한홍의원	2025.6.13.	
2211426	민병덕의원	2025.7.10.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5.11.24.)
2214817	이헌승의원	2025.12.3.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6.3.31.)
2214985	유영하의원	2025.12.8.	

가.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4.1.)에서
위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6.4.2.)는 위 1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
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으로 규정하면서도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을 손자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경우에는 최초 1명만이 보상금 수급의 대상이 되며,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자녀가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손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에 있어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기준으로 수급 권한이 좌우된다는 점의 불합리성,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고, 독립유공자의 연령, 관련 법령 정비 시기,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최초 보상금 수급자가 손자녀 이하인 경우에는 그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모두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최초 보상금 수급자 및 그의 자녀대까지 보상금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좌우되는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유족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나이 많은 사람이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은 나이에 따른 차별을 발생하게 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 기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는데,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위 기준으로도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그 밖에,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연령 제한 기준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제12조제2항 및 제4항, 제17조제6항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3호까지의”를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로, “해당자가”를 “해당하는 사람이”로, “선순위자(先順位者)”를 “선순위자”로 한다.

3의2. 제3호에 따른 손자녀의 자녀.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유족이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⑤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손자녀의 자녀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제1항제3호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제12조제4항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양자는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이어야 하고,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순위자(先順位者)”를 “선순

위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1.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4.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서 제5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법률 제21363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립유공자”를 “제1항에 따른 독립유공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75세”를 “65세”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받는 진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족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유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4조(보상금 지급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던 사람은 제5조제6항, 제1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보상금을 받는다.

제5조(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선순위 손자녀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자로 등록된 손자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4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하고, 제1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보상

금을 받는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 략) <u><신 설></u></p> <p>4. (생 략) ② ~ ④ (생 략) <u><신 설></u></p>	<p>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3의2. 제3호에 따른 손자녀의 자녀.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유족이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u></p> <p>4.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u>⑤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손자녀의 자녀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제1항제3호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제12조제4항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양자는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이어야 하고,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는 독립유</u></p>

⑤ 제1항제4호의 며느리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報償金)을 받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자가 2명 이상이면 그 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으로 한정한다.

제12조(보상금) ① (생략)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1.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2.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⑥ -----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해당하는 사람인-----
선순위자-----
-----.

제12조(보상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선순위자-----
-----.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삭제>

<삭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자녀 1명

가.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나.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⑤ · ⑥ (생략)
 제16조(취업지원) ① (생략)

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1. ~ 3. (생략)

③ · ④ (생략)
 법률 제21363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한다. <단서 신설>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을 지급한다.

4. 제3호에 따라 보상을 받을 사람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을 지급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취업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서 제5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363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료지원) ① -----

 -----.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